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01. 08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



- 1. 건 명 :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 :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시행지침 4.중도해지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정O종	'98.07.01.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	사유발생일(자진퇴사일)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미신청	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	폐문부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01.08.~2024.01.22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정지아 (☎055-239-09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